

통합환경관리인 자주 묻는 질문(FAQ)

(‘23.10.6, 통합허가제도과)

1. 언제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?

- ☐ 원칙적으로 ‘24년 1월 1일부터 선임해야 함
- ☐ 다만, 사업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‘25년 1월 1일부터 선임해야 함

2.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(환경 관련 업무 종사)은 환경기사 자격 등을 취득하고 난 후의 경력만 인정되는지?

- ☐ 자격요건 중 나목과 라목의 경우 취득한 후 각각 4년, 7년 이상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로,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됨
- ☐ 다목의 경우 대기환경산업기사와 수질환경산업기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증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4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인정됨

<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>
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가.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
- 나.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
- 다.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
- 라.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

3. 이직 시에도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유지되는지?

- 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직하더라도 자격이 유지되며 보수교육 등을 정해진 시기에 이수해야 함
- ☐ 다만,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3의2 제1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칙 제18917호('22.6.10) 제2조의 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된 자는 이직 시 자격이 유지되지 않음

4. 기존('24.1.1. 기준) 고용된 환경기술인이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?

- ☐ '24년 1월 1일(시행일) 당시에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0조제1항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7조제1항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

5. 기존('24.1.1. 기준) 고용된 환경기술인이 경과규정에 따라 통합
환경총괄관리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?

- ☐ 부칙 제18917호('22.6.10) 제2조의 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
조치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된 자는 총괄관리자 또는
일반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
- ☐ 다만, 간주된 자를 총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시행일 후 2년 이내에
총괄관리자 선임요건을 갖추어야 함(시행규칙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)

<총괄관리자 선임요건>

-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자
 - 1) 「기술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환경부문(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·진동, 폐기물
처리, 자연환경관리, 토양환경)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
 - 2)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
 - 3)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
 - 4)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9년 이상 환경 관련
업무에 종사한 자

6. 시행일('24.1.1.) 이후 통합허가를 받는 사업장은 기존 임명된
환경기술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?

- ☐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, 통합허가 대상업종이면서 대기
2종 이상이거나 수질 2종 이상인 사업장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더
라도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
- 다만, 허가 이전이라도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환경기술인에
대한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
- ※ (예) '24년 7월에 통합허가 받을 예정인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'24년 1월 1일
기준으로 선임되어있는 환경기술인은 '24년 1월 31일까지 선임신고가 이루어지면
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볼 수 있음

7. 통합환경관리인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?

- ☐ 통합관리사업장의 사업자가 직접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함
(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의2)
- ☐ 환경오염시설법 부칙 제18917호('22.6.10) 제2조에 따라 시행일 당시
통합관리사업장에 임명되어있는 환경기술인은 외부위탁 여부에 관계
없이 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

8. 동일 사업장 내에 통합허가 대상업종과 미대상업종 동시 영위
하는 경우, 통합환경관리인 외에 개별 매체법상 환경기술인을
추가로 채용해야 하는지?

- ☐ 통합환경관리인이 개별 매체법상 환경기술인 자격도 갖춘 경우
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겸직할 수 있음